

제작기기 대여 약정서

사용자 본인은 영화촬영 제작기기 대여를 신청함에 있어 귀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.

1. 위원회가 제작기기 대여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작기기의 파손 및 기기의 고장 등 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제작기기 사용 및 관리상의 준수사항을 등한시하거나, 사용자가 대여 조건을 위반했을 시 제작기기의 대여를 중지하거나 취소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.
2. 제작기기 사용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여조건을 이행한다.
 - 가. 사용자는 제작기기를 촬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.
 - 나. 사용자는 제작기기를 공동으로 사전 점검하여 이상유무 확인 절차 후 대여하고 반납한다.
 - 다. 사용자는 제작기기 대여 중 발생한 제비용을 부담한다.
 - 라. 사용자는 제작기기 반납 시 대여 전 상태로 정리 정돈해야 한다.
 - 마. 사용자는 대여 제작기기에 대한 동산종합보험 가입 후 보험서류를 제작기기 대여 시 제출한다.
3. 제작기기 대여기간 중 제반 사유로 사용(촬영)이 중단된 경우 정상적인 대여기간으로 간주함에 동의한다.
4. 사용자는 대여 제작기기의 손망실, 고장, 파손, 인명피해 등의 사고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제반 피해액을 현금으로 변상한다.
5. 사용자는 사고발생 시 계약한 대여기간 내에 제작기기를 원상회복(수리)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 및 성능의 제작기기로 대체 변상하며, 원상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위원회가 산정한 바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다.
6. 사용자는 대여 후 제반사유로 인한 제작기기의 수리 등의 이유로 사용 및 대여가 정지된 제작기기에 대하여 그 기간(기 계약된 대여기간 제외)동안의 피해액(정상적인 제작기기 대여료)을 현금으로 변상한다.
7. 사용자는 제반 피해 보상처리를 위원회가 지정한 일시로부터 30일 내에 완료한다.

년 월 일

약 정 자 : (인)

부 산 영 상 위 원 회 귀 중